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75
----------	-------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자 : 김영환 · 박상혁 · 박용갑
한민수 · 박정현 · 윤후덕
이재관 · 허 영 · 이광희
윤종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정책 효과성이나 형평성 등에서 더 유리한 경우에도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현재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거나 폐지 시 대체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지 못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 재정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된 재정지출은 원칙적으로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 및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연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실적과 향후 전환 계획을 각각 조세지출결산서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가 전환의 성과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제88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계획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①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

처 장관은 매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필요성, 정책 효과성 및 불평등 개선효과 등을 검토하여 재정지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해당 조세지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경우 재정지출은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 범위 등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실적

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에 따른 조세지출결산서에, 전환 대상·사유 및 재정지출 규모 등을 포함한 향후 전환 계획을 같은 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에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을 위한 기준·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전환 실적 및 전환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4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 4의4. (생략)	1. ~ 4의4. (현행과 같음)
<u><신설></u>	<u>4의5. 제88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계획</u>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③ ~ ⑪ (생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88조의2(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①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필요성, 정책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지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조세지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경우 재</u>

정지출은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 범위 등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실적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에 따른 조세지출결산서에, 전환 대상·사유 및 재정지출 규모 등을 포함한 향후 전환 계획을 같은 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에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을 위한 기준·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전환 실적 및 전환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